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30.)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175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월)

### 2. 제출사유

마포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연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
- 나. 출연의 필요성(사업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마포구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다. 출연금: 10억원

###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5.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出捐)에 대하여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 18조제3항<sup>1)</sup>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
-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목적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이들의 운영자금 융자 시 은행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결정하고 대위변제 충당을 위한 지불준비금으로 사용하게 됨.
- 마포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6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도에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의 막대한 영업피해에 따른 운영자금의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에 기인하며, 2024년도 출연금으로 제출된 10억 원 역시 유사한 사유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 연도별 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단위: 억원)

2005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21년	2023년	합계
2	2	2	2	2	16	10	36

- 2023년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부문에서는 서비스 소비 모멘텀 약화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며, 실질소득 대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둔화, 고금리 주택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실질 부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자금 유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자금 유통이 어려워 곤경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동 출연(안)은 법령에 명시한 절차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의 목적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출연에 따른 특별보증의 대상, 보증 조건 및 지원우대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련부서 설명을 요한다 할 것임.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용자상환금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04.11.20, 개정 2011.3.17)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